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95. 7. 12 영등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95. 7. 18

다. 상정일자: 제3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5. 8. 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날로 심화되는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분야 부서의 사무를 재조정하고 업무수행에 비합리적인 부서의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추가
-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영훈)

동조례 제9조 “도시정비국”의 분장사무 중 제4항 “교통행정과”에 제5호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항 “교통지도과”에 제5호 “주차장설치 및 도로표지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1) 교통지도과에 분장되어 있던 “주차장설치 및 도로표지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분야의 업무로 나누어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교통지도과에 분장하고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로 분장하는 것인데

2) 이는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에 의한 구청 교통행정기능 강화방안과 자치구 교통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 증설한 바 있으나, 직제 및 분장사무의 자치구별 차이로 시민혼란 등 불편이 야기되고 업무추진시 관련 시·구간의 연계성 확보가 곤란하여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교통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계 단위의 전담기능 설치·운영이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서울시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정계획시달(교기 12000-1044호 1995. 6. 9)에 따라 구청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과별 제설치, 재별사무분장 통일) 조정으로 교통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시·구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도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를 신설하여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날로 어려워지는 서울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95. 7. 1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날로 심화되는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분야 부서의 사무를 재조정하고 업무수행에 비합리적인 부서의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 추가
- 교통지도과에는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3. 개정근거

- 교기 12000-1044('95. 6. 5) :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정계획 시달
- 구청장방침 제773('95. 6. 26)호로 교통행정기구(기능) 조정 검토(안)

4. 개정안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제9조 제5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정비국)		제9조(도시정비국)		
①~③(생략)		①~③(생략)		
④(생략)		④(생략)		
1~4(생략)		1~4(현행과 같음)		
		.		
		.		
		.		
	(신설)	5.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5. 주차장 설치 및 도로표지판 관리운영에 관한		5.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항				